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89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2) 추진근거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서울시 저소득 학생들 및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고 우수 학생을 발굴·양성하고 함.

4) 출연 사무내용

○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
- 예체능 분야 우수 고등학생 지원,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우수 대학생 지원,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가정의 자녀 장학금지원,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지원
-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지원사업

- 멘토링, 진로특강, 인문학 특강 등 인재 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5) 기관개요

구분	재단현황
설립	2010.3.1
소재지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규모	675㎡(이사장실, 사무국장실, 회의실(3), 창고, 사무공간)
조직 및 인력	이사장(비상임), 이사회(11명), 감사(2명), 사무국(12명)
장학사업	▶출연금 사업 13건(고등학생 6, 대학생 7) ▶기타사업 6건(고등학생 2, 대학생 3, 공통 1)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483,798천원
-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9,385,397천원, 인건비 599,318천원
운영경비 426,628천원, 성과급 72,455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재)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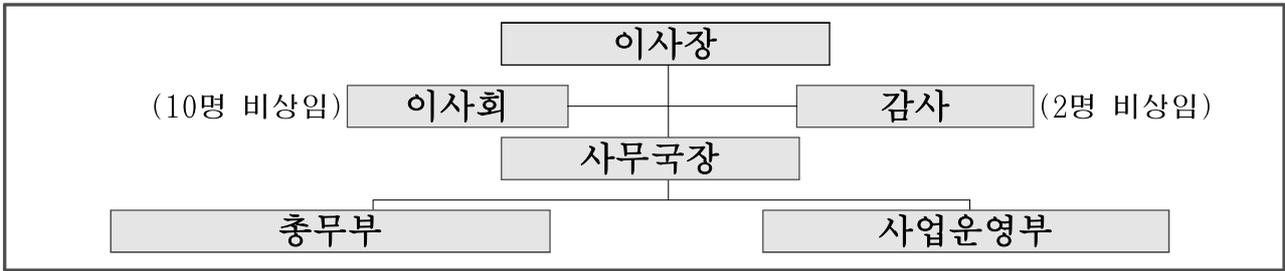
가. 서울장학재단 현황

- (재)서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2010년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사회(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10명, 비상임감사 2명)와 1국 2부의 사무국(정원 13명, 현원12명)을 구성하여, 2020년에는 111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시출연금 105억 7천 2백만원, 운영소득 및 민간기탁금 6억 1천만원)으로 18개 장학 사업에 6,6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 연혁 〉

- 2008. 5.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 2008. 12.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시교육청)
- 2008. 12.24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 2009. 1.8./1.13 재단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
- 2010. 3.1 재단 독립운영 개시
- 2012. 3.7 이경희 2대 이사장 취임
- 2014. 7.1 문미란 3대 이사장 취임
- 2015. 3.11 문미란 4대 이사장 취임
- 2018. 9.27 유광상 5대 이사장 취임(임기: 2018.9.27~20.9.26)

〈 서울장학재단의 조직 현황 〉



〈 서울장학재단의 인력현황 〉

구분	계	상근임원	2급	3~4급	5급	6급
정원	13	1	1	2	4	5
현원	12	0	1	2	4	5
과부족	△1	△1	-	-	-	-

〈 2020년 서울장학재단의 시출연금 사업 현황 〉

- 서울시 출연금 사업 : 13개 사업, 10,572백만원(6,140명)

구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대학생 장학사업	대학(등록금)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2,400명 / 최대2,000천원
	진로활동(학업장려)	학업 및 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300명 / 2,000천원
	공익인재(학업장려)	사회통합형 우수인재	60명 / 4,000천원
	서울평화희망(학업장려)	서울소재 대학생 중 인권증진,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한 학생	10명 / 2,000천원
	서울우수인재(학업장려)	저소득 가정의 전공분야별 우수 대학생	103명 / 4,000천원
	독립유공자후손(학업장려)	독립유공자 자녀 3~5대손	100명 / 3,000천원
	희망플러스(학업장려)	생활비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270명 / 1,500천원
고교학생 장학사업	고교분야(등록금)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교 재학생	1,100명 / 수업료 및 운영비
	고교진로(학업장려)	학업 및 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고등학생	1,328명 / 1,500천원
	예체능(학업장려)	저소득 가정의 예체능 특기 고등학생	160명 / 3,000천원
	하나고(학업장려)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59명 / 기숙사비 및 급식비
	서울 꿈길(학업장려)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소년	100명 / 1,500천원
	소상공인디딤돌(학업장려)	어려운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대학생	150명 / 1,000천원

〈 2020년 서울장학재단의 자체사업 및 민간기탁 사업 현황 〉

– 자체사업 및 민간기탁 장학사업 : 5개 사업, 610백만원 (482명)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고등학생	청계천꿈디딤	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40명 기존20, 신규20	1,000천원	서울시설공단
	오토꿈이름서울	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30명	2,000천원	(주)오토인더스트리
대학생	청춘 Start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보육시설 포함)	40명 기존20, 신규20	기존 2,000천원 신규 3,000천원	(재)바보의나눔 배분금 (주)두산 임직원 기부금
	유영아 학업	성적이 향상된 저소득층 대학생	22명 기존10, 신규12	2,000천원	유영아(KSEC 대표)
중·고 대학생	서울희망 SOS	긴급·신용위기 가정의 중/고/대학생	350명	1,000천원	전기이월금 (시출연금, 운용소득, 기부금 등)

나. 서울장학재단 출연의 적정성

- 평생교육국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우수 학생의 발굴·육성을 위해서 서울장학재단의 지원이 필요하며, 장학재단이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비인가 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한다는 점을 출연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장학재단의 2021년 출연금(104억 8천 4백만원)은 금년(114억 8천 1백만원) 대비 8.7%(9억 9천 7백만원) 감소한 수준이며,
 - 사업비 중 대학생 대상 장학금은 7억원 규모로 증액하였으나, 고등학생 대상 등록금 관련 장학사업은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전액(△16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금년 대비 총 10.0%(△10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경상운영비는 인건비(2천 5백만원) 6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여비(△240만원), 소모품비(△197만원) 등 1천 2백 80만원을 감액하여 제출하였음.

〈 서울장학재단의 최근 3년 출연금 현황 및 2021년 출연금(안) 〉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사업비	10,438,359	10,166,142	10,433,119	9,385,397
운영경비	1,079,958	975,166	1,048,189	1,098,401
총액	11,518,317	11,141,308	11,481,308	10,483,798
전년 대비 증감액 (비율)	1,760,372 (-)	△377,009 (△3.3%)	340,000 (3.1%)	△997,510 (△8.7%)

〈 2021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편성(안) 〉

(단위:천원)

구분	2020년예산	2021년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계	11,481,308	10,483,798	△997,510	△8.7%	
소 계	10,433,119	9,385,397	△1,047,722	△10.0%	
장학사업비	대학생장학사업	5,613,312	6,316,200	702,888	12.5%
	서울희망대학장학금	3,806,500	3,906,500	100,000	2.6%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신설)		201,100	201,100	-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505,000	1,009,000	504,000	99.8%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84,000	284,000	-	-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0,000	20,000	-	-
	서울교환학생장학금	186,600	186,600	-	-
	서울우수인재장학금	511,212	409,000	△102,212	△20.0%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00,000	300,000	-	-
	고등학생장학사업	4,462,640	2,768,600	△1,694,040	△38.0%
	서울희망고교장학금	1,675,000	0	△1,675,000	△100.0%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1,997,000	1,997,000	-	-
	서울희망고교예체능장학금	460,000	460,000	-	-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80,640	61,600	△19,040	△23.6%
	서울꿈길장학금	150,000	150,000	-	-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100,000	100,000	-	-
장학생커뮤니티지원사업	25,000	48,000	23,000	92.0%	

구분		2020년예산	2021년예산(안)	증감	증감률
	프로그램사업비	25,000	48,000	23,000	92.0%
	정보화사업비	192,167	157,597	△34,570	△18.0%
	정보화사업비	192,167	157,597	△34,570	△18.0%
	홍보사업비	140,000	95,000	△45,000	△32.1%
	홍보사업비	140,000	95,000	△45,000	△32.1%
소 계		1,048,189	1,098,401	50,212	4.8%
경 상 운 영 비	인건비	574,012	599,318	25,306	4.4%
	급여	429,828	445,550	15,722	3.7%
	제수당	70,579	71,810	1,231	1.7%
	초단기근로자보수	11,200	17,400	6,200	55.4%
	퇴직급여	62,405	64,558	2,153	3.5%
	경비	411,635	426,628	14,993	3.6%
	복리후생비	122,160	128,077	5,917	4.8%
	여비	8,400	6,000	△2,400	△28.6%
	공공요금및체세	4,329	4,329	-	-
	소모품비	8,846	6,876	△1,970	△22.3%
	도서인쇄비	8,640	7,100	△1,540	△17.8%
	지급임차료	164,772	186,636	21,864	13.3%
	수선유지비	5,268	5,268	-	-
	보험료	306	306	-	-
	지급수수료	16,040	15,040	△1,000	△6.2%
	업무추진비	19,200	19,200	-	-
	관서업무비	3,960	3,960	-	-
	교육훈련비	15,880	13,880	△2,000	△12.6%
	회의운영비	28,160	28,160	-	-
	자산취득비	5,674	1,796	△3,878	△68.3%
	성과급	62,542	72,455	9,913	15.9%
	성과급	62,542	72,455	9,913	15.9%

- 장학사업 중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하나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대상 장학금)’은 매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본 장학사업의 예산 편성액의 산출기초 및 편성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2020.7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55,000	0	△55,000	0%
2019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90,000	69,326	△90,000	77.0%
2018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105,000	70,213	△105,000	66.9%

※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사유

- 2009년 1월 23일,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은평뉴타운지구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부지를, 하나학원은 학교시설을 건립하는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음.
- 서울시와 하나학원은 각각 학교 정원의 15%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하나고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 부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임대료는 임대료 기준금액의 0.5%(통상 5%수준)
- 임대기간 만료 후 하나학원이 부지매입 또는 학교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함.
-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 강남·서초·송파 거주학생은 정원의 20% 초과 금지
- 서울시와 하나학원은 학교 정원의 15%에게 장학금 각각 지급.
- 하나학원은 학교운영비의 20% 출연

※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관련 소송(원고-하나학원, 피고-서울시) : 서울시 패소

- 하나학원은 금융사의 계열사로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나, 우대·대가성이 있는 경우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됨.(출연 및 장학금 지급 불가)
- 하나학원은 전국단위 학생을 선발하는 ‘하나고 임직원 자녀 전형’ 을 강행하여 은행법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출연과 장학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음.
- 서울시는 2013년까지 장학금을 전액 지급, 2014년과 2015년에는 장학금을 전액 삭감.
- 이에 하나학원은 삭감한 장학금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판결내용 : 미지급 장학금 648백만원 중 504백만원의 지급하도록 판결함.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무상교육의 확대, 국가 등(교육청, 타기관, 자치구, 민간, 학교 등)의 장학재단의 증가와 장학대상의 감소 및 중복으로 인해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은 기존 장학대상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모델개발, 인재 발굴, 장기적 장학사업 추진, 장학금별 1인당 지원액의 적정성 재검토 등의 노력없이 전례답습적이며, 관행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장학재단은 매년 1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약 6,6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년 7,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는바, 장학재단이 1인당 장학금액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인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장학재단의 계획 대비 성과 〉

(단위:명, 백만원, %)

	계획		성과		달성률	
	목표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0.7월	6,622	11,182	4,537	3,814	68.5%	34.1%
2019년	6,704	11,067	7,485	10,803	111.6%	97.6%
2018년	6,528	11,442	7,651	11,137	117.2%	97.3%

- 통상의 장학재단은 기본재산 운영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추진은 서울시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본재산 확대 또는 자체수입의 증대 등을 통해 출연금과 장학재단 자체수입의 비율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대비 장학재단의 자체수입 현황 〉
(단위:천원)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출연금 대비 자체수익 비율	6.0%	5.1%	4.9%	5.5%	6.1%
서울시 출연금	11,491,308	11,111,049	11,518,317	9,757,945	10,156,028
자체수입 합계	693,737	566,307	562,530	533,448	617,200
기부금수입	401,000	300,000	303,000	268,000	322,904
이자수익	292,737	266,307	259,530	265,448	294,296

-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부적정, 장학금 업무처리 소홀, 예산 관리 부적정, 채용 및 인사 관리 부적정 등 2015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19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5년 기관운영감사 결과

- ①채용시험관리 소홀 및 회계직원 운용 부적정, ②조례·정관 및 규정 제·개정 부적정, ③서울 장학재단 인력 운용 개선사항, ④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재산관리 소홀, ⑤여유자금 운용 관리 소홀로 수익발생기회 상실, ⑥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민간기탁금을 예산편성 없이 사업비 집행 부적정, ⑦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등 회계관리 소홀, ⑧기부금을 국외여비로 사용 부적정, ⑨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 선발업무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⑩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꿈을드림(Dream) 캠프 운영 부적정, ⑪글로벌 인재 장학사업 운영 부적정, ⑫우리아이 희망장학금 홍보부족으로 장학사업 부실 운영, ⑬장학금 반환기준 및 반환액 산출기준 미비등 반환업무 소홀, ⑭자치구별 학교별 장학 선발 인원 배분 부적정, ⑮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부적정, ⑯장학생 추천 과정 및 생활실태조사 불합리, ⑰사업계획과 다르게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부적정, ⑱ “H-점프스쿨 장학생” 선발 부적정, ⑲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인을 장학생으로 추천 및 선발 부적정

※ 2019년 기관운영감사 결과

①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②장학금 지원관련 업무처리 미흡(2건), ③징계예정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미흡, ④징계처분자 보수규정 부적정, ⑤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⑥회계관리 직원 신원보증보험 일부기간 미가입, ⑦근로계약시 미작성, ⑧경조사 휴가 운영 부적정, ⑨강사 등급 책정 등 부적정, ⑩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 미확보, ⑪물품 관리 규정 부재, ⑫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⑬장학 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결론적으로, 장학재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장학재단이 서울시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과 장학대상의 감소 등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장학재단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학사업의 개선안 마련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 심사 시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8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서울시 저소득 학생들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지원하고 우수 학생을 발굴·양성하고 함

라. 출연 사무내용

○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
- 예체능 분야 우수 고등학생 지원,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우수 대학생 지원,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가정의 자녀 장학금지원,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지원
-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지원사업

- 멘토링, 진로특강, 인문학 특강 등 인재 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마. 기관개요

구분	재단현황
설립	2010.3.1
소재지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규모	675㎡(이사장실, 사무국장실, 회의실(3), 창고, 사무공간)
조직 및 인력	이사장(비상임), 이사회(11명), 감사(2명), 사무국(12명)
장학사업	▶출연금 사업 13건(고등학생 6, 대학생 7) ▶기타사업 6건(고등학생 2, 대학생 3, 공통 1)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붙임1

- 소요예산 : 10,483,798천원
-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9,385,397천원, 인건비 599,318천원, 운영경비 426,628천원, 성과급 72,455천원

사. 이사회 회의록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육정책과 교육정책팀 박지연(☎2133-3913)

항목	2020년 예산 (A)	2021년 요구안 (B)	증감(B-A)	증감률
합 계	11,481,308	10,483,798	△997,510	△8.7%
1. 경상운영비	1,048,189	1,098,401	50,212	4.8%
인건비	574,012	599,318	25,306	4.4%
운영경비	411,635	426,628	14,993	3.6%
성과급	62,542	72,455	9,913	15.8%
2. 장학사업비	10,433,119	9,385,397	△1,047,722	△10.0%
서울희망대학장학금	3,806,500	3,906,500	100,000	2.6%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505,000	1,009,000	504,000	99.8%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84,000	284,000	-	0%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0,000	20,000	-	0%
서울교환학생장학금	186,600	186,600	-	0%
서울우수인재장학금	511,212	409,000	△102,212	△19.9%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00,000	300,000	-	0%
서울희망고교장학금	1,675,000	0	△1,675,000	△100%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1,997,000	1,997,000	-	0%
서울희망고교예체능장학금	460,000	460,000	-	0%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80,640	61,600	△19,040	△23.6%
서울꿈길장학금	150,000	150,000	-	0%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100,000	100,000	-	0%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	25,000	48,000	23,000	92.0%
정보화 사업비	192,167	157,597	△34,570	△17.9%
홍보사업비	140,000	95,000	△45,000	△32.1%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신규)	-	201,100	201,100	